

영등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5. 1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6호로 2017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민의 문화예술·생활체육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의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4조(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제2항 별표1의 진흥대상 사업의 전면정비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의2, 안 제9조, 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상위법령 근거를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명확화 하였음.
(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의2,
안 제9조, 안 제12조)
 - 조례 제4조(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제2항 별표1의
진흥대상 사업을 전면정비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진흥사업대상[안 제4조제2항 관련(별표1)]의
전면 정비로 단순 나열식의 문화예술,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대상 및 범위의 포괄화로 매년 다각적으로 확대·변화하는
문화·체육 분야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육성·지원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